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서울 청년수당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
- **접수기간** : 2025. 3. 6.(목) 10:00 ~ 3. 13.(목) 16:00
 - ※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2. 신청 자격 ·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90. 3. 1.~2006.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구 분	지원 대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1년 미만 복무	만 35세까지	1989. 3. 1. 이후 출생부터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만 36세까지	1988. 3. 1. 이후 출생부터
	2년 이상 복무	만 37세까지	1987. 3. 1. 이후 출생부터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27,230원	58,386원
2인	210,208원	143,648원
3인	271,459원	221,206원
4인	330,765원	292,298원
5인	386,684원	357,963원
6인	431,294원	411,250원
7인	506,004원	496,008원
8인	552,230원	545,970원
9인	599,810원	591,277원
10인	673,463원	654,281원

※ 출처 : 2025년 보건복지부

-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증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https://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③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 만 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체결 동의 체크
- **참여기간 동안의 성장 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 청년수당 사업 기간 동안 성장을 위한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4.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 ① 서울런 회원
 - ※ 신청마감일('25.3.13.)까지 서울런 회원 (서울런 회원 자격 충족자)
 - ※ ('24.12.31. 이전 가입한 경우) 신청마감일('25.3.13.)까지 2025년 자격재검증 통과자
 -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5.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6.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자기성장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성장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1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6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 7월 11일 ~ 8월 11일까지 미제출 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 8월 12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9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단기근로자) 자기성장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성장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재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1일 ~ 8월 11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2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 단,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50만원) 지급)
- **사업 종료 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참고] 市에서도 매월 비대면 자격요건(블록체인) 조회를 통해 참여자 자격 확인
* 타시도 전출(서울시 미거주) 여부, 기초·차상위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부·市 중복사업 참여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후 사후 발견되면 지급 중지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금지)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8개 업종
 -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 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① 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 시 자기성장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흡 또는 미증빙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적절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